

노인 재능나눔 활동 지원사업 사업운영 개요

I 추진배경 및 목적

-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·지자체의 책무(「노인복지법」 제23조)와 노인들의 사회참여(재능나눔, 자원봉사, 기부 등)에 대한 관심과 욕구 증가
- 재능을 보유한 노인에게 재능나눔 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참여를 통한 노후 성취감 제고 및 건강 및 대인관계 개선 유도

II 참여대상 및 활동기간

- (참여대상) 사업 참여일 기준 만 65세 이상 (1953년생까지)
- (활동기간) 참여자 활동기간 6개월 (2018년)

III 지원규모

- (지원내용) 참여자 1인당 월 10만원 이내의 활동비(교통비·식비 등)
- (예산편성기준) 참여자 1인당 62만원(활동비, 부대경비(참여자 관리비 및 사업운영비))

유형	참여자 1인 활동비 지원 기준		국고 보조
	활동비(총액)	참여기간	
재능나눔	1인 54만원 ~ 60만원	6개월	100%

IV 활동 시간 및 활동 유형

- (참여자 활동시간) 월 10시간, 월 4회 이상 (1일 최대 3시간)

* 노인안전예방 활동은 월 10시간, 5회 이상 (1일 최대 2시간)

구분	분 류	활동내용 예시
1	노인 안전예방	취약노인지원 및 시설 안전관리 활동 및 지역 내 불편시설 모니터링
2	상담 안내	노인상담, 학대예방, 인권지킴 활동, 안내(박물관, 내외국인 대중교통 안내, 복지 서비스 등)
3	학습 지도	교육 및 학습 지도 활동 (체육활동제외)
4	문화예술	음악회, 공연 등 문화공연 활동
5	기타	활동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재능나눔 활동

※ 기관의 활동 다양성 추구

V 활동 신청 제외자

노인 재능나눔 활동 신청제외자

-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*
 - * 자활사업 참여 대상
 - ** 국가유공자,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참여가능
- ②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
 - *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포함
- ③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
- ④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(1~5 등급 및 인지지원등급)
- ⑤ 2017년 부정수급자

VI 참여자 선발 기준

○ (참여자 선발기준) 재능나눔 활동 참여자 선발 기준 의거 고득점자순으로 선발

평 가 항 목				합계
관련경력활동	관련자격보유	기초연금수급여부	담당자의견	100점
(40점)	(30점)	(20점)	(10점)	
활동경력	자격증 및 교육 수료증	기초연금 미수급 최대점	참여 적극성 및 활동능력	-

※ 관련 사업운영 안내 자료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

※ 사업운영 안내 자료에 기재된 사업 및 활동기간과 상이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람